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**(Other Required Matters)**

10-1. 기관 경고 및 임원 문책 사항

(Warning to Institution and Disciplinary Warning to Officers)

: 해당사항 없음

10-2. 민원 발생 현황 (Occurrence of Civil Complaints)

: 해당사항 없음

10-3. 이용자 편람 (Handbook for Users)

이용자편람은 공시 내용 중 일반인에게 생소한 금융전문용어를 알기 쉽게 해설하여 일반인의 이해를 돕는 것을 그 목적으로 경영공시 작성지침 상의 용어들을 게재한 것입니다. 주요 용어의 종류 및 해설은 아래와 같다.

- 연결대상자회사

손보사가 해당 회계연도말 현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를 연결대상자회사라고 합니다.

(1) 다른 회사에 대한 손보사의 지분율이 50% 초과하는 경우

(2) 다른 회사에 대한 손보사의 지분율이 30% 초과하면서 최대주주인 경우

(3) 손보사와 손보사의 종속회사(종속회사의 종속회사 포함)가 합하여 위의 (1), (2)에 규정된 방법으로 주식을 소유하거나 실질지배력을 보유함으로써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경우

*종속회사 : 위의 (1), (2)에서 말하는 “다른 회사” 를 “종속회사” 라 합니다.

- 비연결자회사

손보사의 지분율이 15% 초과하면서 연결대상이 아닌 다른 회사를 비연결자회사라고 합니다.

- 주주배당률

주주배당률은 납입자본금에 대한 배당금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아래의 산식으로 산출합니다.

○ 주주배당률 = 배당금액 / 납입자본금 × 100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(Other Required Matters)

- 주당배당액

주당배당액은 1 주당 배당금액을 나타내는 것으로 아래의 산식으로 산출합니다.

○ 주당배당액 : 배당금액/발행주식수

- 배당성향

배당성향은 세후 당기순이익에 대한 배당금액의 비율로 아래의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.

○ 배당성향 = 배당금액 / 세후 당기순이익 × 100

(세후 당기순이익은 연결전 일반계정의 세후 당기순이익을 말함)

- 계약자배당전잉여금

계약자배당전잉여금이란 손보사의 회계연도중에 신규발생한 계약자배당금을 제외한 책임준비금(금리차보장배당 등의 소요액과 계약자배당금의 부리아자를 포함한 금액)을 우선 적립한 후의 잔여액을 말하며 계약자배당은 이 금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.

- 단기매매증권

단기매매차익을 위해 취득한 유가증권으로서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에 한함.

- 매도가능증권

단기매매증권 또는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

- 만기보유증권

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서 상환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이 가능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 또는 능력이 있는 경우에 한함.

- 부실대출

부실대출은 총대출중 고정, 회수의문 및 추정손실을 합한 것으로 보험회사의 자산건전성을 측정 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.

1) 고정은 다음의 1 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합니다.

- 경영내용,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 현재화되어 채권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(고정거래처)에 대한 자산

- 3 월이상 연체대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해당부분
- 최종부도 발생, 청산□파산절차 진행 또는 폐업 등의 사유로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해당부분
- “회수의문거래처” 및 “추정손실거래처”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해당부분

2) 회수의문은 다음의 1 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합니다.

- 경영내용,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이 현저히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
- 3 월이상 12 월미만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

3) 추정손실은 다음의 1 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합니다.

- 경영내용,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의 심각한 악화로 회수불능이 확실하여 손실처리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
- 12 월이상 연체대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
- 최종부도 발생, 청산□파산절차 진행 또는 폐업 등의 사유로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

- 파생금융상품거래

통화, 채권, 주식 등 기초자산의 가격에 근거하여 그 가치가 결정되는 금융상품을 매매하거나 이로부터 발생하는 장래의 현금흐름을 교환하기로 하는 거래 및 기타 이를 이용하는 거래입니다.

- 1) 장내거래는 거래소가 정하는 방법 및 기준에 따라 행하여지는 파생금융상품거래입니다.
- 2) 장외거래는 장내거래가 아닌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한 파생금융상품거래입니다.
- 3) 헷지거래는 기초자산의 손실을 감소 혹은 제거하기 위한 파생금융상품거래입니다.
- 4) 트레이딩거래는 거래목적이 헷지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파생금융상품거래입니다.

- 지급여력비율

지급여력비율이란 보험계약자에 대한 채무를 안정적으로 확보키 위해 보험종목별 위험도 따라 보험계약준비금에 더해 보유하여야 할 자산기준에 대한 순자산 비율을 말하고, 이는 보험회사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다음과 같이 산출합니다.

○ 지급여력비율 = (지급여력금액/지급여력기준금액) × 100

○ 지급여력금액 : 납입자본금, 자본잉여금, 이익잉여금, 비상위험준비금 등의 합계액에서 미상각신계약비, 무형자산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, 이는 보험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순자산가치를 의미한다. (보험업감독규정 7-1 조에 의해 산출한다.)

○ 지급여력기준금액 : 일반보험과 장기보험의 위험보험에 대한 보험료기준 산출액과 보험금기준 산출액 중 큰 금액의 합계액과 장기보험의 책임준비금(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및 미상각신계약비 차감)의 4%의 금액의 합산금액으로 하며, 이는 보험종목별 위험도에 따라 보험계약준비금에 더해 보유하여야 할 자산기준을 의미한다. (보험업감독규정 7-2 조 제 2 항에 의해 산출한다.)

- ROA (Return on Assets)

보험회사의 총자산을 사용하여 이익을 어느 정도 올리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보험회사의 이익창출능력으로 자산대비수익률이라고도 합니다.

- ROE (Return on Equity)

보험회사에 투자된 자본을 사용하여 이익을 어느 정도 올리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보험회사의 이익창출능력으로 자기자본수익률이라고도 합니다.

- 유동성 비율

유동성 비율은 손보사의 지급능력을 표시하는 지표로 그 비율이 높을수록 고객의 인출요구에 대한 지급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

- 위험가중자산

위험가중자산이란 보유자산의 신용도(예시: 채권발행기관의 신용도, 차주의 신용도 등) 및 자산의 성격별로 예상 손실액을 추정하는 것을 말하며, 총자산중 미상각신계약비 및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하여 감독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산별 위험가중치를 부과하여 산출합니다. 통상적으로 위험가중치는 과거 경험율을 기초로 결정됩니다.